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목 차>

- 1.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운용 및 환급 관련 기준
- 2.PG업자의 사업 운영관련 준수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김하영
	담당부서 (과)	디지털금융총괄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영준		연락처	02-2100-2533
	과장	정선인		이 메 일	fsc0970@mail.g o.kr

2026. 06. 03.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유영준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운용 및 환급 관련 기준														
	2.규제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 8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의 9 제13조의 11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3조의 12														
	3.위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 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6.19~2026.07.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4.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자금 보호장치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수단 마련 필요성 대두 *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만개 ☐ '25.12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은 PG업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및 PG업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함 * 단, 경영지도기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시 시정조치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														
	7.규제내용	가.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안 제13조의8제2항·제3항·제4항, 안 제13조의9) -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할 수 있는 정산자금관리기관, 지급보증보험·신탁 방식 및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의 세부사항을 규정 나. 정산대상금액 지급 관련 준수사항(안 제13조의11제3항·제6항·제7항·제8항) -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대상금액 지급시 준수하여야 할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해 정산자금 지급사유 발생 시 사전통지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해산, 파산 등 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다시 외부관리 의무를 부여함 다.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관련 준수사항(안 제13조의12)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해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 점검·보고 등 외부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td><td>192개사(2026년 5월말 기준)</td></tr><tr><td>피규제자</td><td>정산자금관리기관</td><td>82개사(신탁업자 60개사, 은행 20개사, 우체국, 보증보험사)</td></tr><tr><td>이해관계자</td><td>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td><td>약 200만개사(카드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기준으로 추정)</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192개사(2026년 5월말 기준)	피규제자	정산자금관리기관	82개사(신탁업자 60개사, 은행 20개사, 우체국, 보증보험사)	이해관계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	약 200만개사(카드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기준으로 추정)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192개사(2026년 5월말 기준)														
피규제자	정산자금관리기관	82개사(신탁업자 60개사, 은행 20개사, 우체국, 보증보험사)														
이해관계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	약 200만개사(카드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기준으로 추정)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PG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05248.4		305248.4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6619.02		836.5
	15.규제정비 계획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8(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 리)② 법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정산대상금액을 법 제25조의4제 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 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외부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금융회사 2. 정산대상금액을 법 제25조의4제 1항제2호에 따른 예치의 방법으 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제13조의 2제3항제2호 각 목의 금융회사 3. 정산대상금액을 법 제25조의4제 1항제3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 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제3호 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25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 을 말한다.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전자지 급결제대행업자가 법 제25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행	개정안
<신설>	하게 된 경우 제2항제3호의 보험회사가 제13조의11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른 판매자등(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판매자등으로 할 것 3. 그 밖에 판매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대상금액을 법 제25조의4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9(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법) 법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제13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현행	개정안
<u><신설></u>	<u>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이 경우 제13조의3제1호 다목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정산자금관리기관”으로,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는 “법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로 본다.</u> <u>2.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u> <u>3.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u> <u>제13조의11(판매자등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자등의 청구를 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u> <u>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u> <u>가. 법 제25조의4제6항 각 호의</u>

현 행	개 정 안
	<u>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u> <u>나.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 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의 총액 을 판매자등이 청구권을 가지 는 정산대상금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 각각이 청구권을 가지는 정산대상금 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총액이 판매자등이 청구권을 가지는 정산대상금액의 총액보다 크 거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등 각각이 청구권을 가지는 정산 대상금액의 전액으로 한다.</u> <u>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 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u> <u>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4제9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u> <u>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 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 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u>

현 행	개 정 안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1)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사유 · 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⑥ 법 제25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⑦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정산 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1. 정산자금관리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 (법 제25조의4제6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⑧ 법 제25조의4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산대상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제13조의12(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4제12항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관리할 것 2. 제13조의9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법을 정할 때 판매자에 대한 정산 및 이용자에 대한 환불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시기를 고려할 것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점검할 것 가. 점검주기: 매 영업일

현 행	개 정 안
	<u>나. 점검사항: 정산대상금액의 전액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외부관리되어 있는 금액</u> 4. <u>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3호 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외부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법 제25조의4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외부관리할 것</u> 5. <u>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u> ② <u>법 제25조의4제12항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u> 2. <u>정산대상금액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5조의4제9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u>

현행	개정안
	<u>관리할 것</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24.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자금 보호장치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수단 마련 필요성 대두

*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만개

- ☐ '25.12월 개정된 전금법('26.12.17일 시행*)은 PG업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및 PG업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

* 단, 경영지도기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시 시정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정산자금의 안전운용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 절차 마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동일)
	내용	- 정산대상금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고,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정산자금의 운용방식 확대 및 PG업자를 통해 정산자금 지급
	내용	-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은행 등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식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 매수 등으로 확대 - PG업자의 파산 등 지급사유 발생 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고 있는 정산대상금액을 PG업자에게 지급하고 PG업자가 직접 판매자등에게 지급

		하도록 함
규제대안3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 개정 법률에서 모든 PG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외부관리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식, 환급 관련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현행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일관성있게 규율 • 정산대상금액을 공신력이 높은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판매자등의 재산을 보호 • PG업자의 파산 등 지급사유 발생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직접 지급하여 PG업자의 자금유용 가능성 차단	• PG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고수익·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감소 • PG업자의 파산 등 지급사유 발생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정보 확인, 지급액 산정 등 지급절차 수행에 따른 부담 발생
규제대안2	• 정산자금관리기관,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식을 확대하여 규제부담 완화, PG업자의 경제적 이익 증가 • 정산 대상·금액 정보를 보유한 PG업자가 직접 정산대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수행 부담 미발생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비교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규율체계를 적용하여 규제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저하 • 판매자등의 자금인 정산대상금액을 PG업자가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손실 발생시 판매자등의 재산권이 침해 • 정산자금관리기관이 PG업자에게 정산대상금액을 지급하고 PG업자가 이를 직접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PG업자의 자금유용 우려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 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PG업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TF 구성·운영 (25.2월~5월)	• 계열사에 대한 정산금액을 외부 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서 제외 • 외부관리 비율을 60%보다 낮게 완화	• 계열사에 대한 정산금액을 외부관리 대상에서 제외 외부 관리 비율을 60%보다 낮게 완화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불가능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시 안전자산 운용 의무 면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 대상금액은 PG업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 자산 운용의무 적용 필요
		•정산자금 관리 주기를 월말 잔액 기준으로 완화	•월단위로 정산자금을 관리할 경우 실제 정산에 필요한 금액과 외부관리 중인 정산 대상금액의 괴리가 발생하여 판매자 등 보호에 한계
정산자금 관리기관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관련 업계 간담회 (25.3.12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PG업자의 정산자금 청구 목적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정산자금 지급 이후 PG업자의 자금유용 등 발생 시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면책 필요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검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 정산자금관리기관을 은행 등 공신력이 높은 기관으로 제한하고 정산대상금액을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할 필요
 - PG업자의 파산 등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사유 발생 시,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직접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PG업자의 자금 유용 우려를 차단할 필요

3. 규제목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필요성이 대두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200만 개 이상의 가맹점 및 소비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
 - PG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토록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보호 가능
- ☐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와 유사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제도가 '24.9월부터 도입되어 기 시행 중으로,
 - PG업자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 사업자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정산자금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금융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④ 대상 업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⑤ 예비분석내용		☐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업체 규모에 따른 차등화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PG업체의 규모와 무관하게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 보호 필요성은 동일 ☐ 전자금융거래법 상 모든 PG업자에 대해 정산대상금액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 의무가 기 부여되어 있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화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PG업자의 정산자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 등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므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대상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관한 규정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PG업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정산자금관리기관, 운용 방식 등을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
사후 평가관리		심의·검사에 관한 규정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PG업 정산자금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신사업 시도를 위한 규제의 면제·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자금송금자법」의 경우 자금송금업자에 대해 미상환잔액의 자금 보호의무를 부여
 - * (자금송금을 위한 수납업자) 송금을 위해 받은 자금의 일평균 미상환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예치증권 또는 보증채권으로 유지할 의무(최소 25만불에서 최대 700만불)
- (EU) 지급기관(PI)에 100%의 자금을 ¹⁾은행별도계좌예치, ²⁾안전자산투자, ³⁾보증의 방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
 - * 수취한 결제대금을 다른 목적의 자금과 혼용이 금지되며, 은행에 별도 예치하거나 안전한 유동자산에 투자 또는 보험회사 또는 은행과 보험·보증 계약을 체결 필요
- (중국) 비은행지급기관(예: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수취한 자금 일체를 예치금으로서 일괄보호*토록 규정
 - * 중앙은행예치, 청산기관(왕렌)을 통한 거래처리·검증, 예치금 유용금지 및 이체제한 등
- (싱가포르) 주요지급기관(Major PI, 국내·해외송금, 가맹점매입 포함)이 100%의 자금을 ¹⁾책임담보, ²⁾보증, ³⁾신탁의 방법으로 보호토록 규정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U, 중국 등	일치	

○ 타법사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함
- (자본시장법)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신탁하도록 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사례 >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 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 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 ③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 가. 법 제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 나.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하여 지급할 것
- 가.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것
- 나.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
- 1) 예치금의 지급 시기 및 장소
 - 2)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

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사례 >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74조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① 법 제74조 제1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법 제74조 제1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서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정산자금의 안전운용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마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동일)>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619.02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정산자금의 안전운용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마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동일)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619.02		6,619.02
	간접	298,629.38		298,629.38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05,248.4		305,248.4
기업순비용		6,619.02	연간균등순비용	836.5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PG업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제도와 유사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제도가 '24.9월부터 도입되어 기 시행 중이며,
- 법 시행 이전인 '26.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업계가 동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온 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필요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정부는 '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관계부처 TF를 구성(7.25일) 하고, PG업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 '24.9.9일 티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4.9.23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음
- 법 시행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25.9월)·시행('26.1월)하고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하였음
 -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TF」('25.2월~5월)를 통해 업계 의견수렴
-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6.12.1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 전자기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대상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정산자금관리기관, 정산대상금액의 안전한 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PG업자의 등록취소, 파산 등 유사시 판매자등이

정산대상금액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정산자금의 안전운용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마련(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동일)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619.02		6,619.02
	간접	298,629.38		298,629.38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05,248.4		305,248.4
기업순비용		6,619.02	연간균등순비용	836.5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정산자금의 안전운용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마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동일)>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활동제목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의무에 따른 행정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78,400,000	75,023,923
	2027	940,800,000	861,518,738
	2028	940,800,000	824,419,845
	2029	940,800,000	788,918,512
	2030	940,800,000	754,945,945
	2031	940,800,000	722,436,311
	2032	940,800,000	691,326,613
	2033	940,800,000	661,556,567
	2034	940,800,000	633,068,486
	2035	940,800,000	605,807,163
	합계	8,545,600,000	6,619,022,10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설명	산식
	2026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x 1/12(2026년 12월부터 시행)	$1*245*20000*192*1/12$
	2027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2028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2029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1*245*20000*192$

		피규제자수(개)	
	2030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2031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2032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2033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2034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2035	연간투입인원(명) x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원) x 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근거설명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의무에 따른 행정 비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PG업자가 등록 취소, 파산 등 정산대상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정산자금관리기관에 판매자등에 관한 식별 정보, 지급액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등록 PG업자의 경우 기존에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정산자금관리기관과도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지급청구 등을 위해 상시 소통하므로 지급사유 발생 통지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등록 취소, 파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둘째, 정산대상금액 관리 현황을 매 영업일 점검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추가로 외부관리하며, 정산대상금액 관리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이와 관련한 인건비는 약 9.4억원으로 추산됨.		

	* 연간 투입인원(1명) x 연간 투입시간(1시간x245일=245시간) x 시간당 근로임금(2만원) x 피규제자수(192개사) = 9.4억원 셋째,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에게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를 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의무가 있음. 이는 기존 계약서(약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앱 포함)에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해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간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활동제목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의무에 따른 자금의 기회비용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2,300,000,000	2,200,956,938
	2027	28,366,666,667	25,976,206,284
	2028	37,566,666,667	32,919,542,426
	2029	46,000,000,000	38,573,821,805
	2030	46,000,000,000	36,912,748,139
	2031	46,000,000,000	35,323,203,961
	2032	46,000,000,000	33,802,109,053
	2033	46,000,000,000	32,346,515,841
	2034	46,000,000,000	30,953,603,675
	2035	46,000,000,000	29,620,673,373
	합계	390,233,333,334	298,629,381,49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설명	산식
	2026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60%)x자금의 기회비용(0.5%)x적용기간(1/12)	$9200000000000 \times 0.6 \times 0.005 \times 1/12$
	2027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60%)x자금의 기회비용(0.5%)x적용기간(11/12)+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80%)x자금의 기회비용(0.5%)x적용기간(1/12)	$9200000000000 \times 0.6 \times 0.005 \times 11/12 + 9200000000000 \times 0.8 \times 0.005 \times 1/12$

	2028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80%)x자금의 기회비용(0.5%)x적용기간(11/12)+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 기회비용(0.5%)x적용기간(1/12)	$92000000000000 \times 0.8 \times 0.005 \times 11/12 + 92000000000000 \times 1.0 \times 0.005 \times 1/12$
	2029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 기회비용(0.5%)	$92000000000000 \times 1.0 \times 0.005$
	2030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 기회비용(0.5%)	$92000000000000 \times 1.0 \times 0.005$
	2031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 기회비용(0.5%)	$92000000000000 \times 1.0 \times 0.005$
	2032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 기회비용(0.5%)	$92000000000000 \times 1.0 \times 0.005$
	2033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 기회비용(0.5%)	$92000000000000 \times 1.0 \times 0.005$
	2034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 기회비용(0.5%)	$92000000000000 \times 1.0 \times 0.005$
	2035	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 기회비용(0.5%)	$92000000000000 \times 1.0 \times 0.005$
근거설명	2025년말 기준 PG업 미정산잔액 9.2조원을 기준으로 미정산잔액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른 자금의 기회비용을 간접비용으로 계산함.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외부관리 제도 시행 1년차에는 미정산잔액의 60%, 2년차에는 80%, 3년차부터 100%로 외부관리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비용을 계산함. * 미정산잔액(9.2조원) x 연도별 외부관리비율(60~100%) x 자금의 기회비용(0.5%*) ※ 국고채 대비 회사채AA- 금리차(금투협회 신용등급별스프레드지표)		

(정성)영향집단명	정산자금관리기관
-----------	----------

활동제목	유사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PG업자의 등록 취소·말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등 정산 대상금액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 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 및 소비자
활동제목	판매자 정산대금 및 이용자 환불대금의 외부관리
편익항목	가맹점 및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정산대금 및 소비자에 대한 환불대금이 외부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됨으로써 PG업자의 자금 유용, 파산 등 사고 발생시에도 가맹점 및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 * 티메프사태로 인한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만개 /소비자 피해액 234억원, 피해인원 2.1만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PG업자의 사업 운영 관련 준수사항							
	2.규제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제26조제2항 [별표2] 제13조의 13 제20조의 2 제23조의 2 제24조의 2							
	3.위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43조 제25조의 5 제33조의 3 제42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6.19~2026.07.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4.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자금 보호장치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수단 마련 필요성 대두 *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만개 ☐ '25.12월 개정된 전금법('26.12.17일 시행)은 대규모 PG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신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							
	7.규제내용	가.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안 제13조의13)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시 상대방에 대한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 고지 내용,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함 나.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안 제17조제4항) -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정함 다. 변경허가와 변경등록의 신청방법 등(안 제20조의2)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신청방법, 절차를 규정함 라.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안 제23조의2) -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해야 하는 항목 등을 정함 마. 허가와 등록의 취소 기준(안 제24조의2) - 허가 또는 등록취소 사유로서 5년간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누적 횟수를 3회로 정함 바.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안 제26조제2항[별표 2]) - 법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확대한 바, 해당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 기준을 설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자금융업자</td><td>242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자금융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자금융업자	242개사							

	9.규제목표	☐ PG업 등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 PG사 등의 시장 진입을 방지 ☐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등록취소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등 공시 의무 신설하여 건전경영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13(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 의 고지내용 등) 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방법 에 관한 사항 2.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정 산자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른 정산 대상금액의 지급사유, 판매자등의 청구방법 등 정산대상금액 지급절 차에 관한 사항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 급결제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고, 해당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 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 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 경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자본금 요건) ①·② (생략)	제17조(자본금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삭 제>
<신 설>	④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2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2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10억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변경허가와 변경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한다.</u> <u>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u> <u>2.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등록증 원본</u> <u>②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제23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u> <u>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u> <u>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u> <u>4. 법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u> <u>5.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u> <u>6. 법 제28조제2항 제2호부터 제5</u>

현행	개정안																																																								
<신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	호까지의 업무별 정산주기에 관한 사항 7. 결제수수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사항의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 제24조의2(허가와 등록의 취소 기준) 법 제4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0. 17.>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업무정지 기간</th><th>과징금 금액</th></tr><tr><td>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td><td>3개월</td><td>3천만원</td></tr><tr><td>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td><td>1개월</td><td>1천만원</td></tr><tr><td>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td><td>6개월</td><td>5천만원</td></tr><tr><td>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td><td>3개월</td><td>3천만원</td></tr><tr><td>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td><td>1개월</td><td>1천만원</td></tr><tr><td>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td><td>법 제43조제2</td><td>6개월</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	5천만원	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법 제43조제2	6개월	-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업무정지 기간</th><th>과징금 금액</th></tr><tr><td>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td><td>3개월</td><td>3천만원</td></tr><tr><td>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td><td>1개월</td><td>1천만원</td></tr><tr><td>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td><td>6개월</td><td>5천만원</td></tr><tr><td>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td><td>3개월</td><td>3천만원</td></tr><tr><td>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td><td>1개월</td><td>1천만원</td></tr><tr><td>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td><td>법 제43조제2항제1호</td><td>6개월</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	5천만원	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6개월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	5천만원																																																						
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법 제43조제2	6개월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	5천만원																																																						
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6개월	-																																																						

현행				개정안			
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항제1호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8.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3조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어긴 때	법 제43조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8.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3조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어긴 때	법 제43조제2항제3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9. 전자금융업자가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9.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	5천만원	10.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제2항 제4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10.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	5천만원	11.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	5천만원
1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법 제43조제2항제3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12. 선불업자가 법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1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	5천만원
				1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법 제43조제2항 제3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	1천만원
				1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 또는 명령을 어긴 때	법 제43조제2항 제3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	3천만원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4.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만개

- '25.12월 개정된 전금법은 대규모 PG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신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개정 전금법에서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에 관한 고지,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4.8.7일, '24.8.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PG업자의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 준수 의무, 정산자금 외부관리, PG업 등록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 '24.9.9일 티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4.9.23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PG사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등록취소 단계별 조치,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규정 마련 등

- '25.11.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의 통과 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

*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

- '25.1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하위법령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

3. 규제목표

- ☐ PG업 등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 PG사 등의 시장 진입을 방지
- ☐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등록취소
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등
공시 의무 신설하여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 사항 등 개정 전금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타 법령상 사례를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핀테크 활성화 취지를 감안하여 스몰 라이선스를 유지*하면서 분기별 거래규모가 300억원 초과시에만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
 - *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미만시 자본금 3억원
 - ** PG업, 결제대금예치업: 10억원 → 20억원 / 전자고지결제업: 5억원 → 10억원
 - 전자금융업자의 공시사항으로 조직·인력, 재무·손익 등 기본사항과 선불충전금·정산대상금액 관리 기준 준수 현황,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정산주기, 결제수수료 등 이용자 및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설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절차,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명령의 누적 횟수 등을 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금융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 등을 참고
④ 대상 업종		전자금융업
⑤ 예비분석내용		☐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여 기업규모별 자본금 요건 차등화가 기 적용 ☐ 변경허가·등록의 신청방법,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사항, 허가·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명령의 누적 횟수에 대해서는 모든 전자금융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화 기 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에 관한 고지내용으로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의2 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변경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주주 등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 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보유한 주주의 명칭, 성명 또는 지분율이 변경(지분율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
 3. 자기자본 및 제3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가 변경된 경우로서 법 제46조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제출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경영공시)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경영공시 사항으로 조직·인력, 재무·손익 등 기본사항과 법상 조치나 처분을 받은 내용,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경영 공시) ①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7. 28.>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42조(경영공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 자료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건전성·수익성·생산성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3. 대주주·임원과의 거래내역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
4.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의 규모,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 ②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나. 상호저축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5. 법·시행령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 ③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각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및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른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3조(거래조건외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8. 5.>

1. 법 제18조 제1호에 따른 각종 요율(이하 이 조에서 "각종요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 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각종요율을 연율(年率)로 환산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 연율로 환산된 각종요율: 신용카드회원에게 개별 통보
 - 다. 협회가 정하는 구분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등록취소의 기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은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업무정지명령의 누적 횟수를 3회로 정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7조(영업정지)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9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필요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4.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만개

- '24.8.7일, '24.8.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PG업자의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 준수 의무, 정산자금 외부관리, PG업 등록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 '24.9.9일 티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4.9.23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PG사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등록취소 단계별 조치,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규정 마련 등

- '25.11.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

*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

- '25.1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하위법령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을 지속 점검

3. 종합결론

-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 대규모 PG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절차 규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사항 규정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이용자
및 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입이 타당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사업 운용 관련 준수사항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사업 운용 관련 준수사항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92개사)
활동제목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에게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방법,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절차 등을 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서(약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존 인력을 통해 수행 가능하므로 별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움

(정성)영향집단명	전자금융업자(242개사)
활동제목	변경허가와 변경등록의 신청 등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변경허가·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대주주 변경시에만 해당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그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반복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정성)영향집단명	전자금융업자(242개사)
활동제목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준수 현황,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 가맹점수수료 등 이용자와 가맹점의 보호를 위한 공시사항을 정한 것으로, 해당 공시사항들은 전

	자금융업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으로 기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해당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홈페이 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
활동제 목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사업 운용 관련 준수사항 규정
편익항목	가맹점 등의 권익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G업자가 계약 체결시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 을 고지하도록 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준수 현황, 결제수수료, 정산주기 등 전자지 급결제대행 계약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가맹 점의 권익을 보호함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활동제 목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사업 운용 관련 준수사항 규정
편익항목	소비자 권익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변경허가·등록을 의무화하여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준수 현황,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하여 이 용자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법규 준수 여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